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2. 14.(수)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2. 12. 14.(수)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김성환 (02-2110-1420) 사무관 김해나 (02-2110-1459) 사무관 권순호 (02-2110-1427)

방통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 도로교통공단, OBS경인TV(주) 13개 방송국 재허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14일(수)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2개사(도로교통공단, OBS경인TV), 1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위원장 : 안형환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3일(2022.11.28.~11.30.)간 심사를 진행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3개 방송국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고, 허가유효기간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기준에 따라 5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보편화 등 지상파방송 사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 등을 반영하여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방송사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는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부과하였으며, 민영방송사 공통 조건으로 최대주주 관련 언론 보도 현황 제출,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등을 OBS경인TV(주)에 부과하여 방송운영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방송 매뉴얼 비치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재허가 신청 시 이행실적 제출 등 이미 방송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조건에서 제외하여 방송사 개별 재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매년·매분기 등으로 상이했던 실적 제출기한을 매년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재허가 조건의 이행과 자료제출로 인한 방송사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두 방송사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교통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각자의 영역에서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기간 중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준수하고,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및 재허가 조건·권고사항. 끝.

(붙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및 재허가 조건 · 권고사항

□ 재허가 심사결과

방송사업자	방송국	평가점수	심사결과	허가유효기간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북FM방송국	831.88	재 허가	2027.12.31.
도로교통공단	교통제주FM방송국	853.64	재 허가	2027.12.31.
도로교통공단	교통포항FM방송국	856.59	재 허가	2027.12.31.
도로교통공단	교통창원FM방송국	860.03	재 허가	2027.12.31.
도로교통공단	교통울산FM방송국	855.40	재 허가	2027.12.31.
도로교통공단	교통전주FM방송국	853.47	재 허가	2027.12.31.
도로교통공단	교통원주FM방송국	853.36	재 허가	2027.12.31.
도로교통공단	교통인천FM방송국	843.96	재 허가	2027.12.31.
도로교통공단	교통대구FM방송국	855.26	재 허가	2027.12.31.
도로교통공단	교통대전FM방송국	847.92	재 허가	2027.12.31.
도로교통공단	교통광주FM방송국	858.11	재 허가	2027.12.31.
도로교통공단	교통부산FM방송국	851.24	재 허가	2027.12.31.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OBS경인DTV방송국	779.83	재 허가	2027.12.31.

□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1) 도로교통공단

유형	내용	
조건 공통	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편성에서 교통·기상 관련 정보는 포함하되 보도는 제외할 것
	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유형	내용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 방송국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 국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라디오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난청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방송분야 전문가,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해 로컬방송을 60% 이상 편성 하도록 노력할 것 ○ 재난방송 관련 세부 편성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청취 행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

2)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유형	내용	
조건 개별	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는 '22년 재허가시 제출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계획' 수준 이상으로 투자하고,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연도별 적정 유동성 보유기준을 설정하고, 유동성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유동성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22년 재허가시 제출한 '사옥 이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행실적을 즉시 제출할 것

유형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할 것
민영 방송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의 투명성 및 방송전문경영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보장을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대표이사) 유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복수 위촉, 주주의 특수관계자 및 과거 경영진이 아닌 독립적인 감사 임명 등 감사제도 강화 등을 시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최다액출자자(특수관계자 포함) 관련 보도와 관련 프로그램 방송 현황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 방송국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 국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들이 방송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불만 제기 시 방송사의 처리 절차,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 후 시행할 것 ○ 지상파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 활성화를 위한 계획(홍보, 민원처리 방안 등 포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재난방송 시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영어자막, 수어방송 등을 실시할 것 ○ 협찬, 광고, 심의 등 방송관련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내용을 제작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